



13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배만석
서 기 유장춘

1. 조직

- 위 원 장 : 배만석
- 회 계 : 박주철
- 위 원 : 김정식
- 서 기 : 유장춘
- 총 무 : 김종운

2. 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11. 2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 배만석 목사, 서 기 : 유장춘 목사, 회 계 : 박주철 장로, 총 무 : 김종운 목사

② 제104회 총회 수입사항 내용을 살피고, 기존 유권해석 자료들을 발췌 및 연구하여 차기회의 시 의논하기로 하다.

③ 차기 회의는 12월 16일(월)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12. 16(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각 위원이 연구 자료들을 발표하고, 기존 유권해석 자료들도 함께 검토하다.

②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다.

③ 차기 회의는 2020년 1월 30일(목)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0. 1. 30(목) 15:00

☞ 장 소 : 총신대학교 회의실

☞ 결의사항

① 위원 김정식 목사, 유장춘 목사의 연구 자료를 함께 검토하다.

② 차기 회의 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전서노회 김문갑 목사와 전남제일노회 한기승 목사를 본 위원회에 참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다.

③ 차기 회의는 2020년 2월 24일(월)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0. 5. 7(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전서노회 김문갑 목사의 발제 후 전남제일노회 한기승 목사의 발제를 청취하다.
- ③ 2020년 5월 19일(화) 위원 김정식 목사와 유장춘 목사가 만나 의견정리 및 제언을 준비하여 차기에 다시 모이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는 2020년 6월 4일(목) 오전 11:00,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0. 5. 26(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위원 김정식 목사와 유장춘 목사의 의견을 청취하다.
- ③ 2020년 6월 8일 오전 10:30에 연구위원 전체가 모여서 다시 의논하기로 가결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20. 6. 8(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회실행위원회 직전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모임 시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③ 위원 김정식 목사와 유장춘 목사가 별도로 만나 다시 의논하여 보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20. 7. 13(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본 위원회의 최종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다.
 - 가.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는 종전대로 노회로 보내서 재판 없이 노회 판결을 확정하라는 뜻이다. 단, 총회재판국에서는 판결 주문을 기각, 취소, 변경, 환송 4가지로만 명확히 하여 가급적 노회로 환부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 나. 환송은 재판국 판결문의 주문 중 하나로 상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8) 제8차 회의

☎ 일 시 : 2020. 7. 27(월) 10:2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보고 안을 채택한 것을 보고하고,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의 의미에 대하여는 논란이 계속 있으므로 노회로나, 총회재판국으로나 양측의 입장 모두를 각각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 최종보고

1. 제104회 총회 수입사항

마. 환부 해석 관련

329) 중서울노회장 김관선 씨가 현의한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할 때 환부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달라는 질의의 건과

바. 환부, 환송 관련

330) 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현의한 환부와 환송에 대한 유권해석 현의의 건은 현의안 329번과 330번은 병합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게 하고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 위원회 활동 보고

1) 기존에 나와 있는 유권해석 자료들과, 위원들의 연구자료, 현장 목회자들(전서노회 김문갑 목사와 전남제일노회 한기승 목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환송'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에서 말하는 '환부'에 대하여는 마지막까지 의견을 좁히기 어려웠음.

3. 위원회 최종결론

2020년 7월 27일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 보고를 위해 실행위원회 전에 본 위원회로 모였으나,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 해석과 관련하여 위원회 안팎으로 논란이 좁혀지지 않고 항의도 많으므로, 총회재판국으로 환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노회로 환부되어야 한다는 양쪽 입장 모두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총회실행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기로 함.